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6 선고 2019가단2123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변론 종결 2019. 11. 18

판결 선고 2020. 1. 6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290,058원 및 그 중 185,375,876원에 대하여 2019.4. 20.부터 2019. 6. 22.까지는 연 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원고는 2014. 7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한국고용공단과 체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은 위 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사실, 한편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31일 이후부터 연 9%인 사실, 피고 회사는 2019. 2월경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 취소에 따른 반납금 및 이자 미납'의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9. 3.20. 한국장애인보험공단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한국고용공단에 보험금 289,902,140원을 지급한 사실, 2019. 4. 19.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부분을 빼고계산한 구상금은 원금 185,375,876원, 지연손해금 914,18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 290, 058원( = 원금185,375,876원 + 지연손해금 914,182원) 및 그 중 원금 185,375,876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 4.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2019 . 6.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조상민